#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24

발의연월일: 2024. 11. 27.

발 의 자: 박정하·진종오·한지아

서범수・이종욱・조은희

김재섭 · 신성범 · 이인선

김용태 · 신동욱 · 조지연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진흥, 관련산업 발전,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지원대상 대회를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법령상 규정된 국제경기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주관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국제경기대회의 명칭을 변경한 바 있음. 이에, 변 경된 주관단체의 명칭과 대회의 명칭을 법령에 반영하여 대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세계대학경기대회"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국제육상경기연맹"을 "세계육상연맹"으로 하며, 같 은 호 바목 중 "국제수영연맹"을 "세계수영연맹"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경기대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국제경기대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제경기대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계대학경기대회"를, "국제육상경기연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계육상연맹"을, "국제수영연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계수영연맹"을 각각 인용한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경기대회"란 다음 각	1		
목의 대회를 말한다.			
가.·나.(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	다		
관하는 <u>유니버시아드대회</u>	<u>세계대학경기대회</u>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u>국제육상경기연맹</u> 이 주관	마. <u>세계육상연맹</u>		
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바. <u>국제수영연맹</u> 이 주관하는	바. <u>세계수영연맹</u>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